

#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 
【도 시 과】

#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 규정이 미비하고, 관리기관의 관리부실로 수탁자의 부정행위 발생 우려 및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,
- 나.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,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등 신설(안 제18조)
- 나.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 신설(안 제18조의2)
- 다.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8조의3)
- 라. 수탁기관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8조의4)
- 마.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취소 규정 신설(안 제18조의5)
- 바.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24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**7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**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8월 19일 ~ 9월 8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**8. 부서협의 결과 : 성별영향 분석평가**

가. 협의기간 : 2015년 7월 30일 ~ 8월 5일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**9. 기타 참고사항 : 덧붙임**

○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·운영의 투명성 제고(국민권익위원회)

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**

##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”를 “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

2.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

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수탁자는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 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
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
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(대표자)과 친족인 경우
  2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 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·간접 관여한 경우
  3.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 4.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계시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계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

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5(위탁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3.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
4. 지도·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5.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
6.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2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과오납 한 경우
2.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. 다만, 인허가, 등록,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.
3.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위탁관리운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서명		도 시 과
입 안 자	부서장	도시과장
	직위·성명	오 세 인
	팀 장	도시미관팀장
	직위·성명	송 명 현
담당자	송 명 현	
성명·전화번호	(790-5324)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</p> <p>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<u>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</p> <p>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<u>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</p> <p>2.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</p> <p>③ <u>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수탁자는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 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
<p>&lt;신 설&gt;</p>	
<p>&lt;신 설&gt;</p>	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8조의2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</li> <li>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</li> <li>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</li> <li>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</li> <li>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8조의3(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(대표자)과 친족인 경우</li> <li>2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·간접 관여한 경우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	<p>3. <u>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8조의4(지도·감독 등) ① <u>시장은 수탁기관에게 계시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계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
	<p>제18조의5(위탁의 취소 등) ① <u>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</li> <li>3.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</li> <li>4. 지도·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</li> <li>5.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</li> <li>6.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</li> </ol> <p>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4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과오납 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. 다만, 인허가, 등록,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.</u></li> <li>3. <u>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『**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**』  
**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·운영의 투명성 제고**

2015. 7.



**국민권익위원회**

고충처리 · 부패방지 · 행정심판 · 제도개선

# 목 차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·관리 현황 .....	2
1.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법령체계 .....	2
2.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규모 현황 .....	3
3.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·관리체계 .....	3
III .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.....	5
IV . 문제점 및 개선방안 (요약) .....	6
V .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.....	13

# I

## 추진배경

### < 추진 근거 >

- ◆ 법적근거 :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
- ◆ 추진과제 : 부패척결을 위한 3대 전략, 5대 핵심분야 중 '반복적 민생비리'
- ◆ 브랜드과제 :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의 해소 중 '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'

□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, 불법광고물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(현수막 게시대)을 설치

- 게시시설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저비용·고효율 상업광고 이용에 크게 기여하며, 전국 227개 지자체에서 12,958개 게시시설을 설치·운영

- ◆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행정 효율 증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27개 중 138개(61%)의 지자체가 위탁으로 관리
  - ➔ 연간 188억원의 세수확보와 7백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

□ 그러나, 관련규정의 미비와 관리청의 관리 부실로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되는 실정

- 수탁자의 수수료 편취 및 특혜부여 등 위탁 관련한 부패가 지속 발생하고, 불편 민원 발생량과 불법 정비량은 매년 급증

※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 대두

□ 또한, 정당한 반환 사유를 불문하고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,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 초래

□ 따라서,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당한 부담을 해소

## II

#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·관리 현황

### 1

##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법령체계

### □ 개념

○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, 표시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 인·허가를 받는 시설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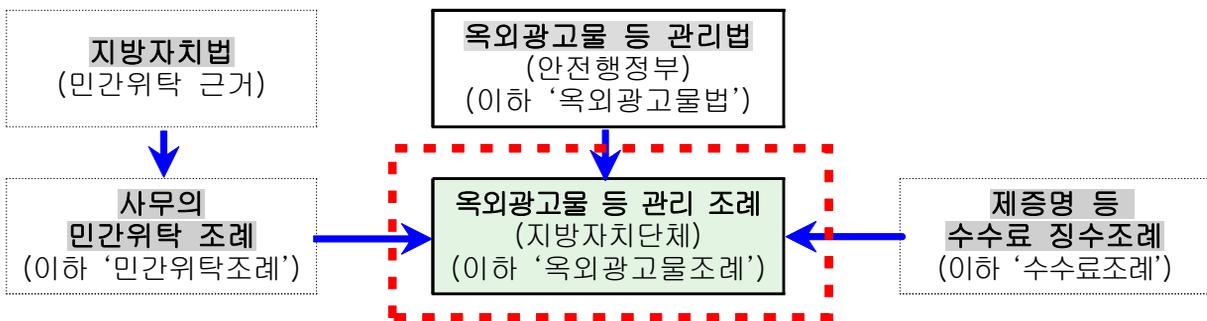
- 옥외광고물은 공공 및 상업광고물로 구분되고, 설치 형태에 따라 16종 (고정 13종 : 간판·선전탑 등, 유동 3종 : 현수막·벽보·전단지)으로 분류

### □ 법령체계

○ 안전행정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(조례)로 규정

- (기본법)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·시행령 (안행부)
  - \* 옥외광고물의 허가·신고, 표시방법, 금지 또는 제한사항, 수수료 및 벌칙 등
- (자치법규)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·시행규칙 (지자체별)
  - \* 지자체 옥외광고물의 신고수리 및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, 수수료 부과·징수 등
- (관련법규) 지방자치법, 민간위탁기본조례,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
  - \*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제반 사항을 규정

<관련 법규 체계도>



⇒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‘옥외광고물조례’ 중심으로 평가 (민간위탁 및 수수료조례를 참고하여 옥외광고물조례를 보완정비)

## 2

##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규모 현황

### □ 광고물 게시시설 및 시장 규모

- 전국의 지자체 244개 중 227개(93%) 기관이 12,958개(73,037면)의 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중임.

※ 서울 ○○구와 ○○구는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현수막 인·허가 업무 폐지 ('08년)

- 연간 현수막 신고수리 128만여건, 신고수수료 188억원을 포함한 약 7백억원의 지역 광고시장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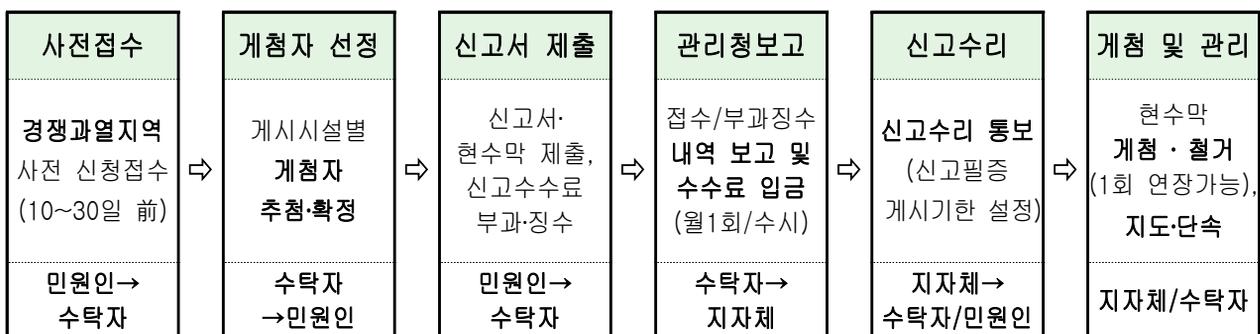
## 3

##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·관리체계

### □ 옥외광고물의 신고·수리 절차

- 신고·수리절차는 민원인이 수탁자에게 사전 접수하면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게재자를 선정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가 수리하면 옥외광고물 게재

<위탁방식의 게시시설 신고수리 흐름도>



- 경쟁과열지역은 사전접수·추첨방식을 도입하여 게재자를 선정, 표시규격·문구 등을 확인하고 수수료\* 징수 후, 신고수리

\*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지자체별 3천원 ~ 1만원(1매당) 수입증지대 징수.

※ 게시시설이 민간위탁인 경우 수탁자가 신고대행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추가 징수하여 게시시설 유지·관리 비용 등에 총당

- 옥외광고물의 인·허가는 광고물의 형태, 설치규모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, 신고대상(현수막 등)은 설치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 신고서 제출

## □ 게시시설의 위탁 및 운영·관리 방식

### ○ (운영·관리 방식) 직영 또는 위탁

- 위탁으로 운영중인 기관은 총 227개 지자체 중 138개(61%)

[표 1. (민간)위탁으로 운영중인 지자체 현황]

(단위 : 지자체수, %)

계 (비율)	직영(A)	위탁(D)		
		소계	전체 위탁(B)	일부 위탁 (C)
227 (100%)	89 (39%)	138(61%)	111 (49%)	27(12%)

※ (민간)위탁은 광고물협회(72%), 시설관리공단(10%), 광고업체(13%), 기타(5%) 순

### ○ (위탁근거)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
- 게시시설을 관리중인 227개 지자체 중 225개 지자체가 위탁근거를 옥외광고물조례로 명시

\* 직영하는 공주시와 상주시는 위탁근거를 두지 않음(부패영향평가 제외).

### ○ (모집방식) 공개경쟁 (옥외광고물조례, 민간위탁조례)

- 위탁은 공개경쟁(모집)이 원칙이나, 위탁으로 운영중인 기관(138개) 중 제한·수의계약 또는 별도 규정 없이 내부방식으로 협약체결하는 경우가 66개(48%)에 해당

# III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

## □ 추진경과

- '14. 1~2월 : 게시시설 운영·관리 민원 및 부패행위 등 사건 조사
- '14. 3~4월 : 게시시설 위탁관리 예비 실태조사
- '14. 3~5월 : 관련 자치법규 등 서면 실태조사
- '14. 6~9월 : 현장 실태조사 및 분석

## □ 실태조사 개요

-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
  - 조사기간 : '14. 3. 6. ~ 7. 15. 기간중
  - 대상기관 : 244개 지자체(광역+기초) 및 4개 권역, 7개 기초지자체
  - 조사방식 : 게시시설 운영·관리 현황 전수조사, 위·수탁계약 관련 사항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

## □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

-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문제영역 파악
  - 수탁자 선정과정 및 계약기간 연장, 사후관리 및 수수료징수 분야 등
-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
  -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
  - 계약방법, 민간위탁 및 수수료 징수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

법령체계		주요 내용
법령	옥외광고물등관리법	· 현수막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- 신고수리 절차와 방법, 신고수수료 부과징수 등 - 세부 신고수리 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
	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	· 게시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- 게시시설의 설치·관리방법 등 - 게시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
자치법규	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	· 게시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· 신고수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
	민간위탁관리조례	· 위탁사무 범위, 지방의회 동의, 수탁자 모집기준 및 절차 등 · 수탁자 통제장치 및 제재 규정 등
	수수료징수조례	· 신고수수료 부과징수반환 등을 규정

# IV

## 문제점 및 개선방안 (요약)

###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·운영의 투명성 제고

#### 문 제 점

#### 개선방안

##### 1. 부실한 관리 및 관련규정 미비로 수탁자 부정행위 만연

- ①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부실로 수탁자의 부패발생요인 내포
- ② 제재규정 미비 및 미온적 조치로 수탁자의 위법행위 재발



##### 1.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

- ①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을 통한 부패 차단
- ②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 재발 방지



##### 2.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·공정 및 특혜시비 상존

- ③ 근거규정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
- ④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
- ⑤ 행정편의적 위탁 연장으로 특정인의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초래



##### 2.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·공정성 제고

- ③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으로 공정·투명성 제고
- ④ 내실있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
- 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



##### 3. 행정편의적인 수수료 징수 규정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미반환

- ⑥ 신청 취소 등 정당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만 야기



##### 3.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

- ⑥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 개선



< 예시 :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<p>&lt;신설&gt;</p>	<p>제○조(지도·감독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○회 이상 지도·점검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,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○조(위탁의 취소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</li> <li>3.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,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4. 지도·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</li> <li>5.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</li> </ol>

회 행	개선안(예시)
	<p>원할 경우</p> <p>6.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</p> <p>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○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
< 예시 :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<p>제○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 ①시장은 도 조례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<u>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del>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del></p>	<p>제○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 ①시장은 도 조례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<u>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</li> <li>2.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③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수탁자는 제○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④위탁기간은 ○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○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필요사유 구체적으로 규정)</li> <li>2.</li> </ol> <p>⑤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○일까지 위탁업무에</p>

현행	개선안(예시)
	<p>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○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</p>
<신설>	<p>제○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</li> <li>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</li> <li>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</li> <li>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</li> <li>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
<신설>	<p>제○조(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) ①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, 적절성,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○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

현행	개선안(예시)
	1. 2. ∴ ④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 ∴
<p>&lt;신설&gt;</p>	<p>제○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(법인·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)과 친족인 경우</li> <li>2.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·간접 관여한 경우</li> <li>3.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</li> <li>4.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</p>

예시 :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<p>제○조(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<u>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○조(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<u>다만,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과오납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. 다만, 인허가, 등록,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</u></li> <li>3. <u>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</li> <li>4. ...</li> <li>5. ...</li> </ol>

# V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

□ 대상기관 : 지방자치단체(광역 2개, 기초 223개) \* 협조 : 안전행정부  
↳ 세종, 제주 ↳ 서울(서초·강남구), 공주·상주시 제외

## □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개선과제명	개선권고 관련법령	권고기관	조치기한
①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	1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마련)	지방자치단체 (광역2, 기초223)	'15.11.
	2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)	"	"
②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	3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)	"	"
	4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)	"	"
	5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)	"	"
③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	6.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(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)	"	"

※ 조치기한 설정 : 자치법규 개정 1년 이하

※ 본 평가서의 법규 개선안(예시)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.